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주죄 주체 확대〉

■ 박은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75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4
가. 도주죄 관련 일반론	4
나. 도주죄 관련 외국 입법례	5
다. 검토의견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박은정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10. 2.
3. 회 부 일: 2025. 10.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와 천재지변·사변 등으로 잠시 석방된 자가 집합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도주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예상하고 고의로 불출석한 자, 구속집행정지 중인 자, 보석 중인 자가 도주하더라도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없음.

이로 인해 매년 약 6천 명에 달하는 인원이 선고기일 불출석 후 도주하고 있으며, 구속집행정지·보석 중 도주 사례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에 대해선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아 압수수색이나 사실조회 등 강제조사를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나아가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도주하여 시효가 완성되어 결국 형을 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형 집행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이에 비해 해외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거나, 도주자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조치를 허용하는 입법례가

다수 존재함. 예컨대, 미국은 형 확정 후 집행에 불응하거나 구금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고, 프랑스와 일본은 형 집행을 회피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강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내 현행법에도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자,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자 또는 보석 중인 자를 도주죄의 주체로 포함하여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45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도주죄의 주체를 현행법상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 외에도 i)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자, ii)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자 또는 iii) 보석 중인 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죄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4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략)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 ---- <u>자(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자,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자 또는 보석 중인 자를 포함한다)</u>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도주죄의 주체가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에 한정되어 구속의 집행을 회피하는 자를 처벌하지 못함에 따라, 개정안은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자,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자 또는 보석 중인 자가 구속의 집행을 회피하여 도주한 경우 도주죄로 처벌하려는 것임.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도주죄 관련 일반론

현행법은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만 도주죄로 처벌하고 있음. 여기서 ‘구금’이란 현실적으로 구금된 것임을 요하므로, 가석방 중에 있는 자, 보석 중에 있는 자,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자, 형집행정지 중인 자는 여기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¹⁾

개정안에서의 “구속의 집행 정지”(이하 “구속집행정지”)는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임.²⁾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피고인에게 긴급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석제도를 보충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³⁾

다만, 구속집행정지 결정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시찰 대상이 되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거제한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

1)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제10판), 박영사, p.768

2)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조(기본방향) ①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② 구속집행정지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시찰대상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도망을 막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가 되므로,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친족에게 부탁 또는 주거제한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살펴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영장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임.⁴⁾ 보석제도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무죄추정의 권리와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구속집행정지와 성질을 같이 함.⁵⁾

나. 도주죄 관련 외국 입법례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도주자는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 도주 또는 단순 도주는 처벌하지 않고, 특수도주죄와 도주원조죄만 처벌하고 있음.⁶⁾

일본은 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된 자만을 도주죄의 주체로 규

4)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5)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814쪽

6) 한경환, 제9장 도주와 법인은닉의 죄, 제5판 주석형법 각칙(2), 5-6쪽

정함.7)

프랑스는 구금영장·체포영장의 제시를 받은 자가 간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도주죄로 규정함.8)

미국 연방법은 법무장관 및 그의 대리인에 의한 구금, 법원·판사·치안판사의 법률에 근거해 발령한 절차에 근거한 구금 또는 미국 공무원 및 직원의 합법적인 체포에 따른 구금 및 구금기관·시설로부터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9)

7) 「일본 형법」

제97조(도주) 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된 기결수 또는 미결수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 「프랑스 형법」

제434-27조(도주) ① 피구금자가 복종해야 할 간수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도주를 구성한다.

② 도주는 3년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③ 도주가 폭력, 문호·장벽의 손괴 또는 매수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5년의 구금형 및 75,000유로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한다. 폭력, 문호·장벽의 손괴 또는 매수가 도주자와 함께 공모한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도 같다.

제434-28조(피구금자의 정의) 다음 각 호의 자는 본절 제2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구금자로 본다.

1. 경찰유치자
2. 경찰유치 후 사법당국의 면전에 출석하는 과정에 있는 자 또는 구인영장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 중에 있는 자
3. 효력을 가지는 구금영장 또는 체포영장의 제시를 받은 자
4. 자유형의 집행을 받거나 또는 그 집행을 위하여 체포된 자
5. 범죄인 인도를 위하여 수용되어 있는 자

제434-29조(준도주)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도주로 간주되어 전조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

1. 보건기관 또는 병원에 수용되어 감시를 받는 피구금자가 감시상태로부터 벗어나는 행위
2. 행형시설 외의 유치의 결정을 받거나 전자감시장치 하의 유치 또는 반자유 또는 외출허가의 혜택을 누리거나 자가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행위
3. 구금형의 집행정지 또는 분할 또는 시설 외의 유치, 반자유 또는 외출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행형시설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전자감시장치 하의 유치처분을 받은 자가 형벌적용판사에 의해서 정해진 장소 내에서 자신의 위치추적을 감지하는 장치를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무력화시킨 행위

9) 「미국 연방법」 18편 제35장 제751조(기관 또는 공무원의 구금 중에 있는 수감자)

(a) 법무장관 및 그의 대리인에 의한 구금으로부터, 법무장관의 명령에 따라 구금된 기관 및 시설로부터, 미국 법원, 판사 또는 치안판사가 미국 법률에 따라 발령한 절차에 근거한 구금으로부터 또는 미국 공무원 및 직원의 합법적인 체포에 따른 구금으로부터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한 자는 그 구금 또는 유치가 중범죄 혐의로 인한 체포 또는 유죄 판결에 따라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 편에 따라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구금 또는 유치가 범죄인인도나 이민법에 따른 추방 또는 강제퇴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경범죄 혐의로 체포·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인 경우에는 이 편에 따라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b) (생략)

다. 검토의견

최근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죄로 처벌할 수 없는 등 실무상 제재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선고기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집행정지·보석 중인 자를 도주죄로 처벌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의 점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도주죄의 주체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자의 단순도주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검토가 필요함.

현행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영장의 집행에 따르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데, 이는 단순한 자기도주행위¹⁰⁾로서 범인 자신의 은닉·도피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과 같이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임.¹¹⁾ 이와 비교할 때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나 구속집행정지·보석 중인 자를 도주죄로 처벌하는 것은 그 실질상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기도주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되는 점에서 형벌체계의 균형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10) “범인도피죄는 …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11)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제8판, 713쪽

둘째, 개정안의 경우 현실적으로 국가의 구금기능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주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검토가 필요함.

도주죄는 국가의 구금기능 또는 구속작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으로서,¹²⁾ 도주죄의 처벌 대상은 ‘구금’을 전제로 하고, 영장이 제시된 자를 도주죄의 주체로 인정하는 해외 입법례의 경우에도 ‘간수로부터 벗어나거나’(프랑스형법), ‘공무원 및 직원의 합법적인 체포에 따른 구금으로부터’(미국연방법) 도주하는 경우를 처벌하여 ‘구금’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서, 국가의 현실적인 구금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에 대해 다른 체포·구금된 피고인의 도주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¹³⁾

셋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대상을 국가의 구금기능 또는 구속작용을 침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구속집행정지나 보석 중에 도주하는 자 등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 중 도주행위를 현행 도주죄의 처벌 대상인 “체포·구금 상태로부터의 이탈”과 비교해서 국

12) 통설(한경환, 주석형법 각칙 2, 제5판, 5쪽)

13) 이 입장에서는 독일 형법과 오스트리아 형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 입법례가 자기도주죄나 단순도주죄를 처벌하지 않고, 특수도주죄와 도주원조죄만을 처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도주죄 처벌에 대해서도 적법행위예의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입법론상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가의 구금기능 또는 구속작용을 침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태양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속집행정지’는 친족에게 부탁 또는 주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보석’은 구속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실행이 선고된 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집행할 수 있을 뿐이지,¹⁴⁾ 구속대상자·피구속집행정지자·피보석자에게 구속집행에 대해 수인(受忍)할 의무 외에 구금·구속으로부터 도주하지 말아야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즉, 선고기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집행정지·보석이 취소된 자의 도주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속집행 수인의무 외에 먼저 출두의무 등 별도로 도주금지하는 의무가 선행적으로 부과되어야 함. 참고로, 「형사소송법」¹⁵⁾은 형집행 소환을 위한 구인제도를 두고 있고, 「형법」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석방된 자의 집합명령

14) 「형사소송법」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① (생략)

②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 5. (생략)

③·④ (생략)

15) 「형사소송법」

제473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①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제474조(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① 전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위반죄¹⁶⁾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형사소송법」¹⁷⁾은 형집행 소환 불응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넷째, 구속집행정지 중의 도주를 막으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정을 할 때에 출국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과 같은 조치를 함께 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제31조의2에서는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과 보석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¹⁸⁾ 구속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동 제도가 적

16)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7) 「일본 형사소송법」

제484조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어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찰관은 집행을 위하여 출두해야 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호출하여야 한다. 호출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용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484조의2 전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호출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두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한다.

제485조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한 때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찰관은 즉시 수용장을 발부하거나 사법경찰원으로 하여금 이를 발부하도록 할 수 있다.

18)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①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사위원회는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내용,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 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용되지 않고 있음.¹⁹⁾

정리하면, 개정안은 도주죄의 주체를 확대하여 실형이 선고되거나 구속집행정지·보석 중에 있는 사람의 도주행위를 막으려는 입법 필요성이 있으나,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자의 단순도주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형벌체계의 균형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국가의 현실적인 구금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체포·구금된 피고인의 도주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처벌의 대상을 국가의 구금기능 또는 구속작용을 침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56

19) 구속집행정지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435호 박균택의원안, 의안번호 제2205444호 주진우의원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